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등〉  
■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643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6.
3. 회 부 일 : 2026. 2.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 Ⅲ. 검토의견

#### 1.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 등

- 개정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해당 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려는 내용임(안 제26조 및 제29조).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br>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br><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br>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br>-----<br>-----<br>-----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br>-----.<br>② -----<br>-----<br>-----<br>-----<br>-----<br>-----<br>-----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  
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지방  
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  
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한 특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 및 「자연환  
경보전법」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  
태계보전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  
금을-----.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법인세·소득세·  
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  
산세 등의 조세를-----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및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라 함) 제26조 및 제29조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및 개발이 촉진될 경우, 평화경제특별구역이 목표로 하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북한 인접지역<sup>1)</sup>은 접경지역의 안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더딘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 개선에 개정안과 같은 세제지원이 기여할 여지

---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예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북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있음.<sup>2)</sup>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sup>3)</sup>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둘째, 현재도 ‘북한 인접지역’ 중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평화경제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sup>4)</sup>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2) ‘북한 인접지역’은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 등 정치·지리적인 여건과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토지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 지역이 기초적인 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태이며,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2019. 1., pp.7~1 참고)

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있으며, 관세가 면세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물품관리 절차<sup>5)</sup>가 진행되므로 오히려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sup>6)</sup>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29조제4항은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sup>7)</sup>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을 신설하더라도 추가적인 감면을 받기 어렵고, 이외에 사용료 등 감면 등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sup>8)</sup>에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5) 면세물품의 평화경제특별구역 내 반입관리,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 등

6) 기획재정부 의견(확인 중)

7)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따라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음.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가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의도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할 수 없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 간 경제적 교류 증대 등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법률 개정으로 지원 확대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적 효과는 조세·예산·부담금 등 관련 개별법의 세부 내용 개정도 있어야 할 것이며, 국·공유 재산 사용 특례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련 법률과도 체계상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재정경제부는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고, 특정지역·산업 등의 활성화를 이유로 개별법상 감면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

한 감면 요구가 쇄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안 제29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한 사항이므로, 입주·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고, 안 제29조 제4항와 관련하여, 개별법 상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등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개정안은 이중지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남북협력기금 사용 근거

-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생략)<br><u>&lt;신설&gt;</u> |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br>(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sup>9)</sup>·운영하는 자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sup>10)</sup>

-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0)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에는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분야 4건<sup>11)</sup> 등 33건의 사업에 총 1,47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 소요비용은 국비, 지방비 및 민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임.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sup>12)</sup>은 현재 전체 추진단계 중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 2029년경에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법 제25조<sup>13)</sup>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평화경제특구 안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1) 2025년에 추진 예정인 남북교류 협력기반' 분야에 대표적 사업으로는 '서해남북 평화도로 건설'(315억원) '동서녹색 평화도로 연결'(신읍지구, 99억) 등이 있음.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1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시·도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계획연도 〉

|          |            |   |            |   |                 |   |                |   |                |   |            |
|----------|------------|---|------------|---|-----------------|---|----------------|---|----------------|---|------------|
| 추진<br>단계 | 기본구상<br>용역 | ⇒ | 기본계획<br>수립 | ⇒ | 개발계획<br>수립      | ⇒ | 특구<br>지정       | ⇒ | 실시계획<br>수립     | ⇒ | 사업<br>착수   |
| 시기       | 2024년      |   | 2025년      |   | 2026년~<br>2027년 |   | 2026~<br>2027년 |   | 2027~<br>2029년 |   | 2029년<br>~ |
| 주체       | 통일부        |   | 통일부        |   | 시·도             |   | 통일부·<br>국토부    |   | 사업<br>시행자      |   | 사업<br>시행자  |

자료 통일부

- 개정안과 같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경우 남북 관계 경색 시 기금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및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의 기반 강화<sup>14)</sup>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동법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이라는 남북협력기금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 용도를 남북교류·협력과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반시설 조성 지원에 다른 재원 없이 남북협력기금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1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연관된 기반 시설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문 문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①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 (정의) 남북 경제교류 및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 인접지역\* 중 통일부장관·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한 시·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강화, 옹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가평,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속초)

- (지정절차) ①시·도지사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작성해 특구 지정 요청 → ②국토부·통일부 장관이 공동 지정

\* 특구의 명칭·위치 / 개발사업 시행자 /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 등을 포함

- (추진현황) 「평화경제특구법」 절차에 따라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발표('25.12월)

— 후속조치로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2.12.)

- (지정 규모) '26~'27년 총 4개 내외
- (제출 기한) △1차 : '26.9.1.~9.30. △2차 : '27.8.2.~8.31.  
\* 통일부·국토교통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 및 개발계획 제출
- (제출자)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공동지정 요청 가능

## ②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 (개발사업 시행자) 시·도지사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부문 외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

—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사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해 주고, 조세 및 부담금도 감면

\*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포함한 41가지 인허가를 의제하고 사용료·수수료도 면제

### ③ 투자활성화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입주기업 범위) ①남북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시행 기업, ②남북 교역·협력기업의 전·후방산업 연관 기업, ③이들 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 관련 기업
- (지원사항) 재정·세제 지원, 기반시설 설치, 특구의 생활여건 개선 등 입주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267 |
|--------------|